청탁은 거절! 부패는 단절! 행정은 친절!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

수신 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귀하
(경유)
제목 건설공사 기간 연장 관련 법령 개정 안내

1. 관련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

2.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**공사기간 연장**을 **요청**할 수 있는 **사유***에 **폭염 · 한파**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개정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 규정이 **'26. 10. 27.자로 시행**되었습니다.

* (기존) 태풍 · 홍수 등 악천후, 전쟁 · 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 등

< 산업안전보건법 >

개정 전	**개정 후('26.10.27. 시행)**
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1. 태풍·홍수 등 악천후, 전쟁·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,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	**제70조(건설공사 기간의 연장)**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. 1. 태풍·홍수·**폭염·한파** 등 악천후, 전쟁·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,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※ 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law.go.kr)에서 확인 가능. 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

근로감독관	강지훈	팀장	대결 2026. 10. 28. 최석원	과장	전결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감독과-6669 접수

우 46334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36 (금사동 144-2 KT금사지점) 2, 3층 / www.moel.go.kr

전화번호 0515596602 팩스번호 0515297826 / bluesea6647@korea.kr / 비공개(7)